

「GMS(GBC Marketing Service)」 2021년도 2차기업 모집(연장) -나이로비-

◆ GMS(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)란?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(GBC)에서 『시장조사-수출거래선 발굴-거래주선-거래성약』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

◎ 사업개요

- 대상지역 : 케냐(나이로비)

※ 용인시에 소재한 GMS 신규 참가기업은 1개지역에 한하여 참가비 무료지원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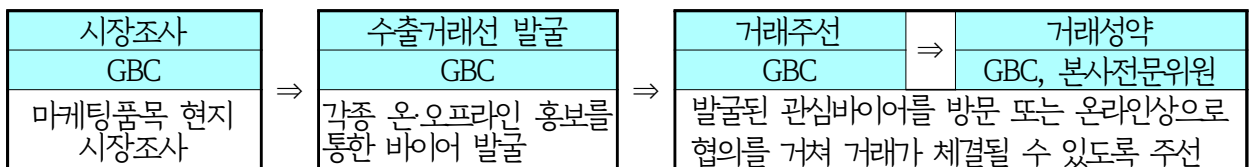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 후 1년

- 참가비 : 한 지역당 ₩1,100,000원(부가세 포함)

◎ 지원서비스

- ① GBC에서 바이어 발굴, 상담, 거래알선(상시)
 - 현지 마케팅 전문가인 GBC 직원이 GMS기업을 전담하여 밀착지원
 -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GMS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
- ②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(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)
 -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
- ③ 온라인 홍보·지원
 -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 경기도관 제품홍보·판매 또는 SNS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
 - ※ GBC마다 관련 지원방법 상이.
- ④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
 - GBC에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·참가하여 GMS기업을 대신해(5개사 내외) 제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, 마케팅 대행
 - ※ 예산사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여부가 결정되며, 전시회는 GMS기업의 품목에 따라 정함.
- ⑤ GMS기업 현지출장 지원(비용은 참가기업 부담)
 - GMS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(전시회 등)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,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
 -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

◎ 서비스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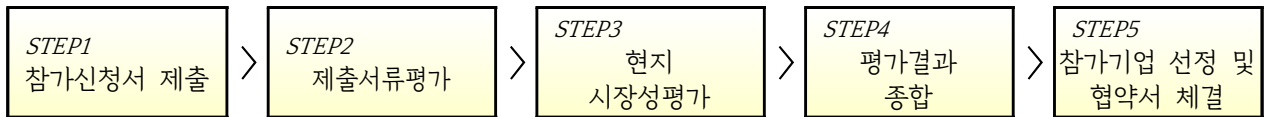


◎ 사업신청

지원대상 :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

신청기간 : < 2021년도 2차 연장> 2021. 3. 11(목) ~ 3. 26(금)

신청절차



신청방법 : www.egbiz.or.kr 에서 온라인 신청

문의처 : 통상진흥팀 031-259-6138, 6165, 6136, 6189

(이메일 : betw2@gbsa.or.kr, kahng777@gbsa.or.kr)

제출서류

[필수서류 - 9가지]

번호	구비 서류
1	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(첨부양식)
2	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(첨부양식)
3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) 민원 24
4	공장등록증 사본 1부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) *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.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
5	지방세납세증명서 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) (민원24)
6	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(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7	신청대상지역 언어(또는 영어)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
8	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(영문) 1부
9	수출판매계약서 *제조기업이 아닌 수출대행기업은 필수 제출

[추가서류 - 1가지 (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)]

10	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/특허(건당 1부) *중국지역 신청기업 중 위생허가 보유기업 반드시 제출
----	--

신청시 유의사항

국/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.

※ 「현지 시장성평가」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.

◎ 유망품목

GBC		품목
뭄바이		• 자동차 부품 / LED 제품 / 화장품 / 중고 산업기계
모스크바		• 건강 보조식품 / 뷰티용품 / 미용 및 의료장비 / 생활용품 / 식품
KL		• 식품 / 가전제품 / 웰니스(wellness) 제품 / 건축자재 / 영유아용품
LA		• 뷰티용품 / 가전제품 / 판촉 홍보용품 / 아이디어 상품 / 반도체 관련 제품 / 자동차 부품
호치민		• 뷰티용품 / 건강용품 / 생활용품 / 산업재 / 조달·산업용 원자재
중동		• (테헤란) 제지류 / 석유화학 제품 / 의료기기 / 건축자재 / 뷰티용품 • (이스탄불) 의료기기 / 전기·전선자재 / 원자재 및 부품 / 화장품 / 보안제품
방콕		• 영유아용품 / 건축자재 / 실버제품 / 전기통신제품 / 스마트 산업기계
나이로비		• 생활용품 / 화장품 / 치안·보안제품 / 설계·감리제품 / IT(Information Technology) 제품
중국	상하이	• 영유아용품 / 건강보조식품 / 화장품 / 반도체 소재와 장비 / 반려동물제품
	선양	• 영유아용품 / 뷰티용품 / 소형 가전제품 / 건강보조식품 / ICT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) 제품
	광저우	• 생활용품 / 화장품 / 전기전자 소재부품 / 건강·미용기기 / 식품
	충칭	• 화장품 / 식품 / 생활용품 / 영유아용품 / 창의용품 (디자인상품, 문구, 아이디어 상품) (※ 중국 내 온라인 및 O2O 사업 특화 GBC)

◆ 참고사항

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

가.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

- 회원사

* 온라인 :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(webdocu.kita.net)

(www.KITA.net -> 회원사 ->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)

자사실적조회 : www.KITA.net -> 회원사 -> 자사수출입실적조회

* 오프라인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)

- 비회원사

*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)

나.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

- www.trass.or.kr (문의전화 : 02-2140-0735)

◆ 참가기업 우대사항

- GBSA 아카데미 무역·해외 교육비용 일부 지원(한도금액 25만원)

◆ 기타사항

가. 신청서 허위 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.

나. 신청서 허위 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,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.

- 지원제한 기간 : 1년

- 신청서 허위 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
-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(중복지원 제한)
-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



GBC Marketing Service

- 지원제한 면제(예외)
 - 선정(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)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
 - 천재지변, 재난·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
 - 기업의 부도, 파산,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

다.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「기업지원 운영규정」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)
-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

2021년 3월 11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GMS 사업 신청기업 평가표

구분	평가항목		평가기준	평점
계				0
기본사항 (25)	수출 준비도	외국어 홈페이지 구축	구축(2)/미구축(0)	
		외국어 제품 홍보물 보유	보유(3)/미보유(0)	
	수출업무 대응성	수출업무 전담조직 보유	보유(3)/미보유(0)	
		수출업무 전담직원 (외국어 가능) 보유	보유(3)/미보유(2)	
		전년도수출실적	보유(5)/미보유(0)	
공공 인증	경기도 유망중소기업(2)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(3) 고용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(2)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(2)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(2) G-노사상생 우수기업(2)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(2) 수출프론티어 인증(3) 신안양(5), 원천인증 수출자 인증서(3) 경기형년 + 트레이매저 고용업(4) 일 거리제공기업(2)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(2) 의무고용 준수기업(2)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(5) 성과공유 확인기업(5)	10 (최대)		
시장성 평가 (75)	기술력	희망지역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보유수준	S(20)/A(16)/B(12) /C(8)/D(4)	
	시장성	대상제품 현지시장 진출가능성 및 향후 시장성	S(20)/A(16)/B(12) /C(8)/D(4)	
	지원 가능성	신청기업 현지 마케팅 대행 GBC 지원가능성	S(35)/A(28)/B(21) /C(14)/D(7)	
참가제한	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		감점 20점	
참고사항	※ 기본사항, 시장성평가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각 GBC별 GMS 정원 안에서 선정 ※ S=매우 우수, A=우수, B=보통, C=미흡, D=매우 미흡			

※ 상기 선정 평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※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,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
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